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. 3. 26 선고 2014가단456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, 지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3. 12.

판결 선고 2015. 3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823㎡ 및 D 대 374㎡ 중 별지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표시,가. 7
부분 약 72㎡ 지상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,나. ㄴ 부분 약 88㎡ 지상 목조 및 철파이프조
슬레이트지붕 단층 가추를,다. ◎ 부분 약 44㎡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옥을,라. ㄹ 부분 약
22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를,마. ◎ 부분 약 22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
창고를,바. 부분 약 10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를,사. 이 부분 약 40㎡ 지상
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을,아. ◎ 부분 약 180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
단층 비닐하우스를,자. 3 부분 약 140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, 위
가. 내지 자.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논산시 C 전 823㎡ 및 D 대 374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표시 1 부분 약 72㎡ 지상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, ㄴ 부분 약 88㎡ 지상 목조 및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가추, 트 부분 약 44㎡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옥, ㄹ 부분 약 22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, 미 부분 약 22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, 부 부분 약 10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, △ 부분 약 40㎡ 지상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, ◎ 부분 약 180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, 7 부분 약 140㎡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를 각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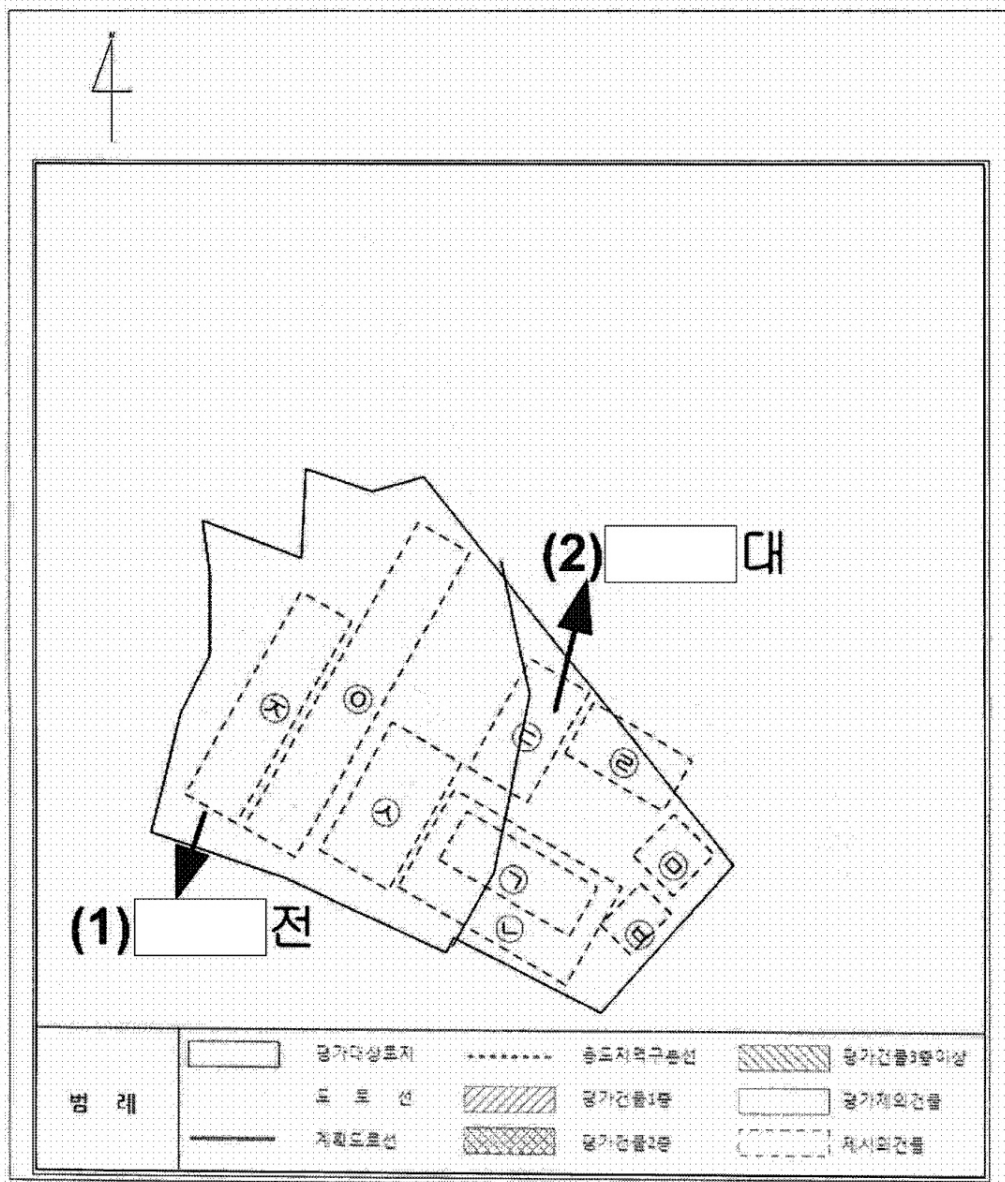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강지웅

별지

지 적 개 황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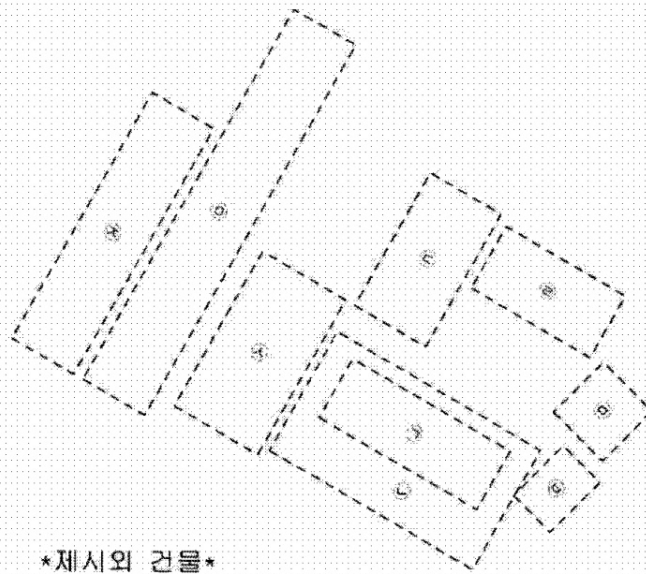
Page : 1



건물개황도

Page : 1

4



제시외 건물

- ①조적조 기와지붕 단층(주택) 약72㎡
- ②목조 및 철파이프조 스테이지붕 단층(가추) 약88㎡
- ③목조 스테이지붕 단층(구옥) 약44㎡
- ④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(창고) 약22㎡
- ⑤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(창고) 약22㎡
- ⑥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(창고) 약10㎡
- ⑦세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(창고 및 화장실) 약40㎡
- ⑧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(비닐하우스) 약180㎡
- ⑨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(비닐하우스) 약140㎡

범례

	공과대상토지		종교지역구분선		공과건물3층이상
	도로선		공과건물1층		공과제외건물
	계획도표선		공과건물2층		제시외건물

끝.

